

■ 공무원보수규정 [별표 40] <개정 2020. 1. 7.>

고위공무원의 직무급 금액(제68조제1항 관련)

1.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(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·지도관 제외)의 직무급 금액

(단위: 천원)

구 분	가 등 급	나 등 급
연간금액	13,000	7,000

2.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·지도관 및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직무급 금액

(단위: 천원)

구 분	가 등 급	나 등 급
연간금액	6,100	4,600